

법인 자금인출 구조 검토보고서

— 가지급금 해소와 이익잉여금 인출방안의 실행가능성 검토 —

I. 검토 개요 및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구 분	내 용
법 인	제조업, 2013년 설립(업력 13년), 연 매출 약 30억원
주주 구성	대표이사가 100% 보유
대표이사	62세, 근속 13년, 현재 연봉 1.5억원
가 족	배우자, 아들, 딸 (자녀 2인 모두 성년이며 국내 거주)
회사 가치	약 80억원(가정)
가지급금	<u>약 15억원</u>
의뢰 사항	①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② 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꺼내는 방법 ③ 시중에서 제안받은 「지주회사 설립 후 증여·유상감자」 구조가 실제로 되는지 ④ 폐업하고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안

2. 검토 전제

회사 가치 80억원, 가지급금 15억원을 가정하고 2026년 시행 세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의 얼마에 취득했는지, 정관과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실제 검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II. 핵심 결론 요약

검토 대상	결론	핵심 근거
지주회사 설립· 증여 단계	세법 적용은 맞 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법인의 이익(법인세법 제 15조), 주주에게는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 5)
유상감자로 세금 없이 인출	<u>근거가 없습니다</u>	증여의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해 주는 것은 ' 팔 때'뿐이고, 감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 안 하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	<u>할 수 없습니다</u>	가공인건비는 전액 비용 부인되고 소득으로 처 분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폐업 후 퇴직금과 상계	조건이 맞으면 일부 가능	해산 시 퇴직위로금은 비용 인정(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 제5항).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 올린 뒤 퇴직금	<u>신중해야 합니다</u>	퇴직 직전 부당하게 올린 급여는 올리기 전 기 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대법원 2015두 5015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검토할 만합니다	10년 이상 경영·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조특법 제30조의6)

III. 「지주회사 설립 후 증여·유상감자」 구조의 검토

1. 제안되는 구조의 핵심

시중에서 법인 대표에게 흔히 제안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① 자녀들이 돈을 내어 지주회사를 세우고, ② 대표가 가진 회사 주식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증여하며, ③ 회사가 지주회사에 배당을 하고, ④ 지주회사가 그 돈으로 유상감자를 반복해 자녀들이 자금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제안의 논리는, 지주회사에 증여할 때 매긴 증여세만큼 자녀들의 주식 취득원가가 올라가므로, 나중에 유상감자를 해도 받는 돈이 취득원가를 넘지 않아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까지 성립, 마지막에서 막힙니다



2. 단계별로 따져 보면

가. 증여 단계 —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에게서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 가치가 법인의 이익이 되어 법인세가 나옵니다(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가 과세되면 그 법인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 주주에게는 예외적으로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제4항, 제45조의5).

부친이 자녀들의 지주회사에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들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심판례도 있습니다(조심2024서3050, 2024. 9. 10.). 여기까지는 제안 내용이 세법과 맞습니다.

나. (핵심 문제) 유상감자로 세금 없이 꺼낸다는 주장

(1) 증여의제로 낸 세금만큼 주식 취득가액에 더해 주는 규정은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반면 유상감자에서 과세하는 의제배당은, 받은 감자대가가 '그 주식을 사는 데 실제로 쓴

돈'을 넘는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그 주식을 사는 데 직접 들어간 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따라서 지주회사가 유상감자로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 실제로 낸 출자금을 넘는 거의 전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큼니다. 제안 구조의 가장 큰 이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단위: 억원)

구 분	제안측 주장	본 검토 의견
받는 감자대가	15.0	15.0
인정되는 취득가액	증여의제액 포함(≒15.0)	실제 낸 출자금만(소액)
과세되는 배당소득	0	약 15.0
세부담(최고 49.5% 기준)	0	최대 약 7.4

위 계산은 최고세율을 가정한 개략치이며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세금 없이 꺼낸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세율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다. 거래를 다시 볼 위험

세 단계 이상을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면, 과세관청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다시 짜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런 구조는 ① 가지급금을 없애려는 목적이 뚜렷하고, ② 지주회사에 독자적인 사업 실질이 없으며, ③ 배당을 받자마자 반복해서 감자로 자금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형태여서 다시 볼 위험이 큼니다.

라. 가지급금 채무를 지주회사가 떠안은 방법의 한계

지주회사가 대표의 가지급금 채무를 대신 떠안아도, 회사 입장에서는 빚진 사람이 대표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 바뀔 뿐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업무와 무관한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넣고 지급이자도 비용에서 빼야 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질 뿐입니다.

3. 정리하면

제안 구조 가운데 지주회사 설립, 증여의제, 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 같은 개별 요소는 세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유상감자로 세금 없이 꺼낸

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IV. 개별 방안 검토

1.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방법 —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거나 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 가공인건비여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가져간 사람의 소득으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급여 형식을 빌려 돈을 꺼내는 순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하지 마셔야 합니다.

2. 폐업하고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

가. 되는 부분

회사를 해산하면서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면, 그때 주는 퇴직위로금은 마지막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줄 퇴직금과 받을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하면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고도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가지급금을 갚는 재원으로 유효합니다.

나. 한도와 위험

(1) 회사 쪽에서는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규정이 없다고 보면 지금 기준으로 약 1.95억원(연 1.5억원 × 10% × 13년)에 그쳐, 가지급금 15억원을 정리하기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2) 무엇보다, 퇴직 직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를 크게 올린 뒤 그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올리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비용에서 빠지며 상여로 처분됩니다(대법원 2015두50153, 2016. 2. 18.). 급여를 올려 한도를 키우는 방식은 단기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3)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만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특정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원 전체에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어야 하고, 규정을 고치기 전 근무기간까지 높은 배율을 소급해 적용하면 부인될 위험이 커집니다.

(4) 폐업한다고 해서 세금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따로 나오고 (법인세법 제79조), 남은 재산을 나눠 받으면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다. 정리하면

연 매출 30억원의 멀쩡한 회사를 지금 폐업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세무상으로도 불리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급여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근거 자료를 쌓고,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을 정비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퇴직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조건이 맞을 때의 이야기이며 확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3. 배당으로 이익잉여금 꺼내기

100% 주주인 대표에게 주는 배당은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됩니다. 배당은 급여·퇴직금과 세율을 비교해 연도별 금액을 정하는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며, 나중에 자녀에게 지분이 일부 넘어간 뒤에는 사람별로 소득이 나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승계 관점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는 ①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가 ② 18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억원을 빼고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회사는 2013년 설립으로 10년 요건을 채웠고 대표도 62세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검토할 실익이 큼니다.

다만 대상 업종은 법에 열거된 것에 한하므로,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와 실제로 하는 주된 사업이 그 업종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5.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소각하는 방법의 위험

시중에서 권하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익소각」 방식은, 소각해서 받은 돈이 결국 원래 주주에게 돌아간 사안에서 거래를 다시 보아 원래 주주의 배당으로 과세한 확정판결이 있으므로(대법원 2024두43430, 2024. 11. 14.) 권하지 않습니다.

6.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급하지 않으니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지급금은 두면 둘수록 붙어 납니다. 매년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받지도 않은 이자를 회사가 번 것으로 봅니다.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정해진 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회사 이익에 더하고,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이 사안은 15억원 기준으로 연 6,900만원 안팎이 매년 회사 이익에 더해집니다.

둘째, 회사가 낸 대출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는 비용에서 빠집니다. 대표에게 빌려줄 돈이 있으면서 은행 이자를 비용으로 넣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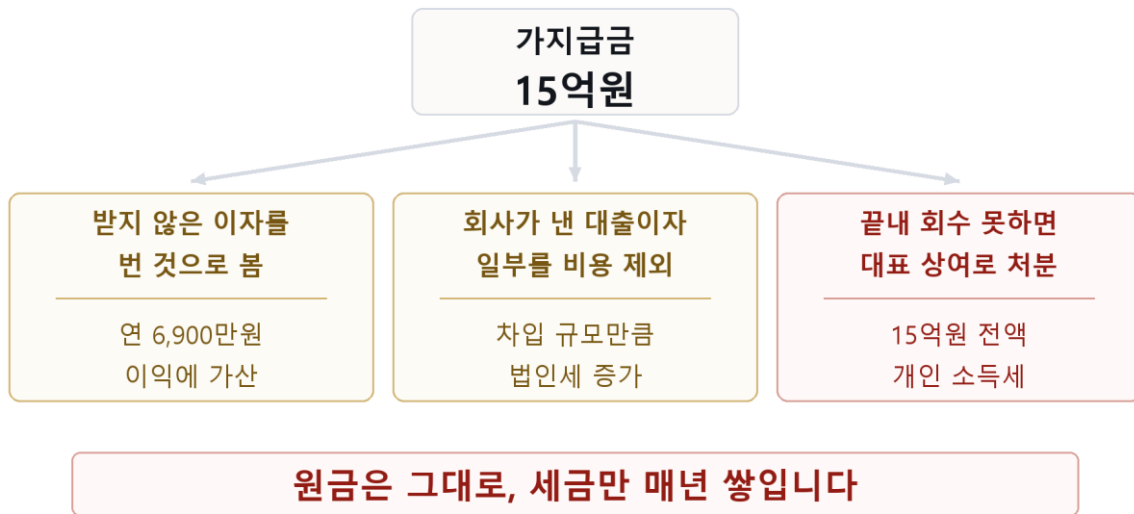
셋째, 대표가 퇴직하거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못 받으면 그 금액 전부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즉 15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대표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미루다가 한꺼번에 맞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단위: 원)

항 목	내 용	연간 영향(개략)
인정이자	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를 회사 이익에 가산	69,000,000
법인세 증가	위 금액 × 세율 20% 가정	13,800,000
지급이자 부인	차입금이 있는 경우 비율만큼 비용 부인	차입 규모에 따라 변동
장기 방치 시	회수 불능 확정 시 대표에게 <u>상여 처분</u>	15억원 전액 소득 과세

정리하면, 가지급금은 매년 세금을 만들어 내면서 원금은 그대로 남는 부채입니다. 완벽한 방법을 찾느라 미루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세금을 만들어 냅니다



7. 자주 오해하시는 것

가. 「내 회사니까 내 돈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법인은 대표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돈을 대표가 쓰면 빌린 것(가지급금)이 되거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분 100%를 가지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이 정당하게 가져가는 길은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네 가지뿐입니다. 각각 세율과 시기가 다르므로 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실제 설계의 핵심입니다.

나. 「세금 안 내고 꺼내는 방법이 있다더라」

회사에 쌓인 이익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이고, 그것을 개인이 가져갈 때 한 번 더 과세하는 것이 우리 세법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 꺼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세금 없이」를 내세우는 구조는 대부분 이 보고서 III.에서 본 것처럼 어딘가에서 전제가 무너집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세금 0」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꺼내면서 세율이 낮은 방법을 고르고, 여러 해에 나누어 낮은 구간을 쓰는 것입니다.

다. 「퇴직금은 세금이 적으니 크게 받으면 된다」

퇴직소득은 실제로 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

로 보아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정관·규정이나 근속연수로 정해지므로, 규정을 미리 정비하고 근속기간을 쌓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라.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면 비용 처리가 된다」

실제로 일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는다면 정상적인 비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하지 않는데 이름만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4대보험료만 부담하며, 조사에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V. 종합 결론 및 권고

1. 방안별 종합 평가

방 안	실행 가능성	평 가
지주회사·유상감자 구조	<u>낮음</u>	가장 큰 이점의 근거가 없고 거래를 다시 볼 위험도 큼
일 안 하는 가족 급여	<u>불가</u>	전액 비용 부인·소득처분. 하지 마십시오
폐업 후 퇴직금 상계	조건부	규정 정비와 기간 경과가 전제. 지금 폐업은 불리합니다
급여 인상 후 분할 상환	유효	이자가 계속 쌓이는 것을 끊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	보조 수단	세율을 비교해 연도별로 설계하십시오
가업승계 특례	<u>검토 권고</u>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권고 순서

순 서	시 기	하 실 일
-----	-----	-------

순 서	시 기	하 실 일
1	즉시	가지급금 잔액과 생긴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쌓인 이자 규모를 계산하십시오
2	1개월 안	<u>급여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근거(직무·책임·업계 보수 자료)</u> 를 만들고 주주총회 결의를 하십시오
3	3개월 안	정관과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임원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비하십시오
4	해마다	올린 급여를 재원으로 <u>가지급금을 나누어 갚으십시오</u>
5	병행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업종·지분·사후관리 요건)

3. 하지 마셔야 할 것

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돌려받는 것, ② 급여를 올린 직후 폐업하고 큰 퇴직금을 받는 것, ③ '세금 없이 꺼낸다'는 전제의 반복적 유상감자, ④ 소각대금이 원래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이 네 가지는 모두 세무상 부인되는 유형이므로 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